



# 업무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기술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및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1. 여성·가족분야 연구·사업에 대한 협력
2. 기업 내 임직원 대상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사안) 예방 및 성인지교육 등 성평등 관련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
3. 도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4.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

## 제3조(비밀유지)

1.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양 기관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4조(협의 조정)**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효력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4.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 기관은 협의하여 중도해지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  
